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17,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스페인: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시행령 가결

2024 년 12 월 20 일에 제정된 법률 7/2024 는 EU 최저한세(Minimum Tax) 지침 2022/2523 에 따라 OECD 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법률로, 2024 년 12 월 21 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4 년 12 월 22 일에 발효되어 2023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세제는 대규모 그룹(직전 4 개 회계연도 중 최소 2 개 회계연도에서 연결매출이 7 억 5 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그룹)이 운영하는 각 관할 구역에서 최소 15%의 글로벌 유효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든 유효세율이 15% 이하인 경우, 최소 유효세율에 맞추기 위해 추가세(top-up tax)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세는 2023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세를 시행하는 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공개 협의단계에서 임시문구가 공개됨), 향후 규정은 이미 필라 2 법률에 제공된 일부 측면을 구체화하고, 해당 세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 시행령 또는 해석규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이어 관련 세금신고 및 자진신고를 승인하는 장관 명령과 적용될 수 있는 기타 형식적 의무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KPMG Spain 이 작성한 2025 년 1 월 보고서에서 새로운 추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7/2024 는 다음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함께 포함합니다:

- 법인세
-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VAT)
- 특정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
- 전자담배 및 기타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포함한 소비세

또한, 법률 7/2024 가 승인된 후 며칠 후, 정부는 법률 7/2024 에서 도입된 일부를 수정하는 추가세 및 기타 조치를 통합하기 위해 법률 9/2024, 10/2024, 11/2024 를 통과시켰습니다.

태국: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시행령 공포

태국은 2024 년 12 월 27 일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세 관련 긴급시행령을 태국 정부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25 년 1 월 1 일 부로 시행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동안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에 글로벌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행령은 OECD가 공개한 다음의 규정들에 따라 추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득산입규정(IIR)

(2)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3)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규정

해당 시행령에는 필라2 목적의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산식에서 분자(조정대상조세) 및 분모(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장관규정에 규정될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에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이 없으나 향후 칙령(Royal Decree)에 규정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OECD 지침에 따라 여러 상황 별 추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시행령은 납세자가 첫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 및 추가세 납부를 규정하는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GloBE) 모델 규칙에 따라 행정적 세부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의거하여 추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상법인을 대신하여 한 개 이상의 다른 대상법인이 추가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에는 추가세

분할납부 및 환급에 대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상황 별 시행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징금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필라 2 최저한세 추가세 산정방식 입법

최근 발표된 법률인 '2024 년 다국적기업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규정'은 필라 2 규정에 따른 추가세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GloBE) 소득 또는 손실의 계산 및 배분
- 조정된 과세액의 계산 및 배분
- 투자 및 투명 과세법인에 대한 적용
-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
- 최초 과세 범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과도기 규정

상기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프랑스: 필라 2 신고 서식, 국가별 보고서 통지서

2024 년 12 월 5 일 필라 2 신고 및 통지 의무에 관한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2025 년 1 월 25 일, 프랑스 과세당국은 프랑스 필라 2 대상법인들의 필라 2 신고를 위한 새로운 서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최종모기업의 법인명, 주소지, 납세자번호, 그룹정보신고서(GIR) 제출 책임이 있는 법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신고 및 추가세 납부 책임이 있는 프랑스법인 등의 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 섹션에는 프랑сту자기업의 현지 최저한세 추가세(DMTT)를 납부할 그룹지정법인에 대한 정보도 요구됩니다.

해당 서식의 첫 섹션은 작년까지 신고서식 2065-SD 에 포함되었던 국가별보고서(CbCR) 신고를 위한 통지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서 전자제출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2024 년 12 월 31 일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5 월 19 일까지)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4-법규국조-0521, (2024.10.08)

제목: 한·러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러시아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완전 자회사를 보유함
- A법인은 국내 화주와 '유탄유 수출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적재한 유탄유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하는 동시에,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국내 화주의 러시아 자회사와 내륙운송계약을 맺고 A법인의 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한 유탄유를 철도를 통해 러시아 내 인도지까지 운송함
- A법인은 국내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유탄유를 운송하는 대가로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러시아 자회사가 수행하는 러시아 내륙 운송과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로부터 위 복합운송용역의 일부(철도 부킹, 물품관리 및 추적, 서류 작업 등)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음
- 쟁점용역대가 지급 시,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2024년 이후 러시아 내국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 함

2. 질의요지

-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가 러시아에서 수행하는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03 관세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으로 한국 철강업계 타격 예상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안도 검토 중..

1. 개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10일(현지시간)에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 서명 직후 "우리는 친구는 물론이고 적으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외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2. 포고문 주요 내용

1)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로 금번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면제 및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적용 받던 **'263만 톤 무관세 쿼터'**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됨.

2) 적용 품목 확대

- 단순 원자재 뿐만 아니라 창틀, 고층 빌딩 자재 등 가공된 철강·알루미늄 제품까지 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였음.

3) 우회 수출 차단

- '북미 생산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향후 미국 수출 철강은 '용해 및 주조' 과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 과정을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함. 이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

3. 시사점

한국 철강업계는 기존 쿼터제 덕분에 일부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포고문 서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검토를 언급하였고 특히 캐나다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단 외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들은 미국 내 생산 유도를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철강뿐 아니라 여러 수출 주도 산업에서 생산 거점 변경에 대한 고민, 북미 생산 인정 요건 강화에 대한 대비 및 수출 거래처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